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

특정소방 대상물	대상물 명칭(상호) 50플러스 남부캠퍼스	대상물 구분(용도) 복합건축물(노유자시설, 근린생활시설)
	관계인 (성명: 김근태 전화번호: 02-2066-3002)	소방안전관리자 성명: 김근태 전화번호: 02-2066-3002
	소재지	
소방공사 업체	업체명(상호)	사업자번호
	대표이사 (성명: 전화번호:)	
	소재지	

	이행조치 내용	이행조치 일자
이행완료 사항	차동식 열감지기 탈락 불량 교체 1F: 주차장(유수검지장치실 앞) B1F: MDF실	2024. 03. 12
	피난구 유도등 비상배터리 교체 3F: 컴퓨터실(전면 출입구) 2F: 비상계단실 입구	2024. 03. 11
	3층 2구역(남자화장실 앞) 방화셧터 정온식 감지기 교체	2024. 03. 14

「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등의 수리·교체·정비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2024년 03월 14일

관계인: 김기정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소방본부장·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이행계획 건별 이행 전·후 사진 증명자료 1부 2. 소방시설공사 계약서(이행조치 내용과 관련됩니다) 1부

유의 사항	
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	1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수리·조치·정비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2.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수리·조치·정비 이행계획을 별도의 연기신청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